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1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조계원 · 허성무
박홍근 · 이기현 · 김윤덕
임미애 · 민형배 · 황명선
김동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, 삭제 등의 시정명령,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.

그러나,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,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·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.

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 까지 2~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.

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,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

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(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).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2조의6제2항 중 “20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,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.

3.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

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1호 및 제2호에”를 “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”로 한다.

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할 수 있다.

4.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

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122조의6제7항을 위반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2조의6(심의위원회의 구성)	제122조의6(심의위원회의 구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<u>2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30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⑦ (생 략)	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제133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)	제133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	① ----- ----- -----

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,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(이하 “불법복제물등”이라 한다)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1.·2. (생략)

<신설>

② ~ ⑧ (생략)

제133조의3(시정권고 등)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<후단 신설>

--.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,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33조의3(시정권고 등) ① -----

-----.

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

1. ~ 3. (생략) <신설>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,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③·④ (생략) 제137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7. (생략) <신설> ② (생략)	<u>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할 수 있다.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</u> ② -----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137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제122조의6제7항을 위반한</u> <u>자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